



LEGAL UPDATE

화우 보험 뉴스레터 2024-1호

Feb. 2024

비조치의견 사례

- 보험회사가 합리적으로 산정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가 기초서류상 명시된 가산금리보다 낮아 전자를 적용할 경우, 보험업법 위반에 따른 조치대상인지 여부 (230115) -

요청대상 행위

보험회사가 합리적으로 산정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가 기초서류상 명시된 가산금리보다 낮아 기초서류상 가산금리보다 낮은 가산금리를 적용할 경우,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 요지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보험업법 제127조의3).

회신 요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의 형식적 문언을 그대로 적용시 소비자는 부당한 추가 금리를 부담하게 되어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보험업법 해당 조항의 취지에 반하며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예상됨.

따라서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사업방법서 등)에 확정 수치로 명시된 가산금리보다 낮은 합리적으로 산출한 가산금리를 적용하더라도 보험업법상 제재를 비조치함.